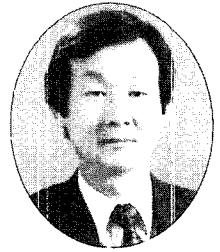


난개발, 막을 수 있다



박결호
환경부 환경정책국장

1. 머릿말

우리 국토는 지금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40년동안 개발연대를 거쳐오면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고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총량적인 경제발전과 지역개발이 촉진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에 수반되는 국토의 훼손과 환경파괴는 국민 생활의 삶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고있다 허물어지는 울창한 산림, 사라지는 희귀동식물, 시궁창으로 변해 버린 실개천, 매꾸어지는 습지와 늪지 그리고 갯벌 우리의 아름다운 금수강산(錦繡江山)은 현세대의 탐욕스런 개발 욕구 앞에 무참히 무너지고 있다.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세대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인 유한한 국토환경을 무작정 훼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자연환경의 훼손을 수반하는 개발은 지양되어야 하고 환경용량, 생태용량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한다. 자연의 형평이 깨어지고 생태계가 허물어진 곳에서는 온갖 종류의 새와 물고기 등 생물이 살 수 없으며 그러한 환경속에서는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주요한 국가행정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법제화하여 금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친환경적 국토관리업무를 전담할 국토환경보전과를 신설하여 금년 10월 17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또한 1977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23년 동안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수단으로서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해온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

하여도 교통·재해·인구 등의 영향평가를 통합하여 지난 연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제정·공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의 보완·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2.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강화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계획수립 또는 타당성 조사 등 초기단계에서부터 미리 환경적 측면에서 검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토록 함으로써「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2000.8.17) 전까지는「행정계획및사업의환경성검토에관한규정(총리훈령 제299호)」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보존목적의 용도지역내의 공공사업에 대하여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총리훈령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① 그 대상을 공공사업에 국한하고 있어 난 개발의 주요원인인 민간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비록 입지가 부적정 하다 할지라도 이를 제한할 수단이 없었으며, ②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 제외토록 되어있어 사전예방적 수단으로서의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었고,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와 미리 협의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또한 제외하고 있어 환경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계획이나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심도있는 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즉, 국토이용계획이나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환경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왔

으나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전협의 근거규정이 없는 행정계획도 많아 환경성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안고 있는 사후적 보완수단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1981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①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② 주로 사업의 계획이 확정된 후 실시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③ 입지의 타당성 보다는 오염의 저감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총전의 총리훈령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와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9.12.31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법정제도로 도입한데 이어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①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② 사전환경성 검토시의 구비서류를 구체화하는 한편, ③ 협의의 절차, 협의기간을 정함으로써 사전예방적 의사결정 수단으로서 환경성검토제도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0.8.17부터 시행에 들어간 환경정책기본법 제 11조에 근거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총전의 제도와 달리 보완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관련법령에 사전협의 근거규정이 없는 농공단지의 지정, 온천개발계획 등 10개 행정계획과 총리훈령에서 배제하였던 민간부문이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 산림 등 보존용도지역에서의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도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으로 추가하였다.

둘째, 사전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구비서류 내용을 구체화하고 구비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어떤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입지의 타당성이나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성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 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대상지

역의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측 및 저감대책 등의 자료는 사전환경성 검토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이다. 행정계획을 수립·결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인가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구비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제출 받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은 물론 관련 법령에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토이용계획이나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같은 29개 행정계획은 협의를 요청할 때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도록 하였다.

셋째, 협의기관, 협의기간을 특정하고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사전환경성검토를 요청하는 자 즉, 계획을 수립·확정하는 자 또는 사업을 허가·승인·인가하는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외의 경우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다. 사전환경성검토를 요청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를 요청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협의결과를 통보 받은 관계행정기관에서는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협의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협의의견의 이행상황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당해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협의의견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현지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무릇 어떤 제도이던 간에 운용과정에서 제도도입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거나 변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엔 환경정책기본법령상의 제도로 출발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정착되도록 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운용의 기본틀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차별적, 유기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결정된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환경관련법규와 환경보전시책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환경오염저감대책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는 달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정성적·정량적 관점에서 심대할 경우 당해 계획자체를 취소, 축소조정 하거나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되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자체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살리도록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면 사업계획이 확정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나 내용을 간소화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단계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조건들은 환경영향평가시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두 제도가 상호 유기적 관계에서 운용되고 함께 발전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둘째, 제도운영의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9월부터 환경부 본부 및 지방환경관리청에 「사전환경성검토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전문위원은 환경, 도시계획, 토목·건축, 자연·생태 분야의 학계 및 연구기관의 관계전문가, 환경·시민단체의 임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기하도록 하고자 한다. 「사전환경성검토 전문위원회」는 사업의 규모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50%이상인 대규모 사업이거나 민원의 발생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민감한 사업 등에 대하여 대상사업의 입지타당성 등 적정성에 관한 사항,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등 협의 내용과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함께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이나 사업 완료 후에도 사전환경성 검토결과에 대한 협의

의견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게 된다.

셋째, 공동참여를 보장하고 검토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있는 그대로의 환경보전에 가치우위를 두고 필요불가결한 개발까지도 억제하는 경우 곳곳에서 마찰과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가적 관점에서 또는 국민이나 특정지역 주민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수립된 행정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계획수립 주체가 납득할 수 없는 협의의견이 제시될 경우에도 그러하다.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유관기관은 물론, 해당지역의 주민이나 민간환경단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동 제도가 제도 운영 주체의 일방적 의사결정수단으로 이용되어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당해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 또는 사업을 허가 또는 승인하는 과정에서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1977년 환경보전법에서 처음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91년에는 환경정책기본법으로, 1993년에는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그 근거법률이 바뀌어 가면서 제도적인 개선을 모색하여 왔다. 환경·교통·재해·인구 등 각종 영향평가의 절차를 통일하고 통합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제정되어 (1999.12.31 법률 제6,095호) 2000.1.1부터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1981

년부터 실정법상의 제도로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외에도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제도가 병렬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

그 동안 환경·교통·재해·인구 등 영향평가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별도로 시행됨으로써 동일한 사업이 2가지 이상의 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경우 절차의 중복과 비용의 과다 지출 등으로 사업자에게 시간적·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에서는 영향평가에 관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97.4.23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통합·개선을 경제활성화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98.2.12에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정한 후 2년여에 걸친 통합작업 끝에 '99.12.3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영향평가통합의 기본방향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제도를 통합하여 평가절차를 통일하고 영향평가서 작성을 단일화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주축으로 통합법을 제정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조항을 삭제하였다.

2001년부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체제로 시행될 환경영향평가업무는 종래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갖고 있던 한계와 과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통합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내용 가운데서 향후 운용하기에 따라 유용한 수단이 될 부분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확장하였다.

통합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도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환경관리역량을 제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둘째,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였다.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게될 주민의견 뿐만 아니라 전문가 및 시민환경단체의 의견도 평가서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주적 참여절차를 보

장해 주고 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협의 행위의 기속력을 확보하였다.

평가서협의기관장이 승인기관장에게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적 강제력이 강화되어 의사결정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사업자도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환경관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평가서협의기관장도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의 필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갖추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관한 협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아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사전예방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협의·재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영향평가의 본래 취지인 사전예방적 의사결정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시켰다.

또, 평가서 협의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환경영향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환경영향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통합영향평가법상의 유용한 수단을 십분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문제,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전문성 문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과 평가항목 선정문제, 환경영향평가대상의 제한과 평가시기의 문제 등 그간 비판을 받아온 본질적 문제들이 해소 내지 경감되도록 하여 사업계획 결정 전 의사결정 수단으로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운용하고자 한다. 통합영향평가법이 단순한 절차의 통합일 뿐 진정한 의미에서 평

가의 통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통합법에 그대로 승계된 현행 환경영향평가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직성해소, 영향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참여의 확대와 평가절차의 투명성제고, 의사결정수단으로서의 영향평가의 기능회복 등이 주요한 대표적인 제도개선과제라 할 것이다.

4. 개발과 환경보전의 통합방안

이번에 강화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통합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 유기적으로 시행되면, 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경제개발이나 성장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의 토지이용제도가 친환경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만으로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욕구와 환경에 대하여 높아진 국민의식 변화를 뒤쫓아 가기란 어려운 것으로 본다.

현재 90여개의 법령에서 무려 220여개의 지역·지구·구역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국토의 어느 곳이든 환경과파괴적인 또는 눈에 거슬리는 시설물과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허점을 안고 있다. 개발압력이 도시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농촌지역까지 확산되고 있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규제들이 계속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자연환경은 물론 대기, 수질, 수자원, 폐기물, 해양환경 등 국토환경을 정확하게 조사, 진단, 평가하여 각 지역별로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실현을 위한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이른바 「국토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환경종합계획은 국토전체에 대해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지역을 장기적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국립공원보전계획, 상수원관리계획, 습지보전계획, 갯벌보전계획, 백두대간 및 비무장지대 보전계획 등의 환경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공간에 대한 보전계획을 포함한다. 또한 녹지 및 공원조성계획, 생물서식공간(biotop)계획, 생태계보전계획, 경관계획, 수변지획(Water Fronts), 녹지네트워크계획, 어메니티(amenity)계획, 대기소통계획 등의 친자연적 계획을 포함하는 장기적 환경계획이다.

국토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토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정보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상세한 토지피복분류도, 실선형의 녹지자연도, 생물서식공간지도, 생태자연도 등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이러한 환경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국토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한 다음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은 엄격히 개발을 금지하고, 그 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개발을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환경수용능력범위 안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환경용량, 생태용량범위 안에서의 국토개발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근래 여론조사결과 경제발전보다는 환경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에 75%이상의 국민들이 공감함에 비추어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5. 맺는 말

개발은 악이 아니다.

다만, 무계획적인 마구잡이 개발이 문제될 뿐이다. 인간과 자연생태계가 공생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개발은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좁은 국토에 수많은 인구가 북적대는 우리나라는 개발 수요는 지속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생태적, 환경보전가치가 큰 지역은 반드시 지키고, 보전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유보지역으로 후세대에게 이용권을 물려 주어야 하며,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친환경적 계획수립하에 개발되어야 한다. 즉, 보전의 틀 속에서 계획적인 개발이 허용되어야 한다. 언뜻 보기에 따라서는 현행의 법과 제도만으로도 이른바 난개발, 마구잡이 개발이 설 땅이 없는 곳이 우리의 국토이다.

그럼에도 전국도의 곳곳이 훼손되는 현상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토이용관리제도가 복잡 다기 하기만 할 뿐 국토관리의 기본철학이 정립되지 못하고 환경을 소중히 고려하는 국토이용에 관한 입법의 불비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상징적인 예로 백두산에서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척추이자 허리인 백두대간,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중심지역인 1,400km 백두대간도 각종 개발사업으로 산림 생태계와 자연경관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은 이곳은 꼭 보전되어야 한다는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환경용량 조사자료를 토대로 이러한 자연환경 훼손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인 하나 뿐인 국토에 대한 개발과 환경보전간의 조화를 지향하는 기본이념과 이의 실질을 담보하는 입법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개발위주, 공급위주의 토지이용제도의 틀을 벗어나 환경적·생태적 차원의 새로운 국

토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작업이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 할 것이다. **環境保全**

【필자약력】

- 영남대 공과대학 토목공학과(공학사)('74)
- 화란 델프트 공과대학 위생 및 환경공학과정 (Diploma)('77)
-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도시계획학석사)('80)
- 콜롬비아대 공과대학 박사과정 수학(자원과학, 지구 및 환경공학 전공)('97. 1 ~ '98. 5)
- 건설교통부 하수도과장, 상수도 과장
- 건설교통부 한강홍수 통제 소장
- 건설교통부 상하수도 국장('93. 11 ~ '94. 5)
- 환경부 상하수도 국장('94. 5 ~ '96. 2)
- 주 국제연합 대표부 환경담당 참사관('96. 2 ~ '98. 3)
- 환경부 수질보전국장('98. 3 ~ 2000. 7. 20)
- 환경부 환경정책국장(2000. 7. 21 ~ 현재)

새 가족

협회 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협회는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출 5종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등산주물공업사	심이경	경북 경산시 일량면 신대리 284-1	광일기업㈜	이종우	경북 옹진시 남구 동촌동 5
	등산자연휴	김재형	경북 안동시 풍천면 기산리 산 26-1	청성영농조합법인	박창언	경북 영덕군 축산면 기암리 231
	대영사㈜	심상근	경북 구미시 고아읍 화산리 262	㈜중부그린	장문수	충남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58-5
	동양정공㈜	박동환	경북 경주시 황곡면 가정리 451-2	㈜대영 예산하수처리장	변덕	충남 예산군 예산읍 공평리 259-1
	동양정미소	방상국	경북 영덕군 영해면 발영리 56	한국프라미스㈜	남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운운리 120-2
	제상산업	안영기	경북 칠곡군 가산면 심곡리 52-6	㈜이인	이준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번암리 28
	한진산업	박경옥	경북 영천시 대창면 404-2	㈜코리아신여	김중희	충남 아산시 신항면 남성리 48-6
	우성기업㈜	황원수	경북 구미시 구포동 622	부여노안병원	김동희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반산리 254-1
	단석산업㈜	한구채	경북 영덕읍 화천리 45	새원산업㈜	이재용	충남 아산시 도고면 금산리 148-1
	보성수지산업사	금병용	경북 구미시 장천면 신장리 71	㈜인주종합철강	이홍희	충남 아산시 인주면 병영리 182-2
	철강전지㈜	조환일	경북 구미시 공단동 210	일영자동차공업㈜	손경태	서울 송파구 거여동 33
	대양기계	조성구	경북 경산시 자인면 교촌리 379-5	송기서 자동차공업사	송화봉	서울 구의3동 219-11
	일광산업㈜	최종희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801-9	대영기업사	오세운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1 한신세라피아 4동 704호

배출 4종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관 련 업 체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우성유리	조달공	대구시 달성군 농공읍 본래리 29-151	동방환경개발	황현식	대구시 북구 노원3가 449-1	
	㈜세이ESAB	이종영	경남 창원시 성주동 51	주식회사 엔비오	이동권	서울시 중구 을동3가 28 동국대학교 동관내 벤처창업지원보육센터 2호	

특별 회원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대전제3-4산업단지관리공단 환경사업소	박규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69-1
	동일방직주식회사	서민석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1 정현빌딩